

'벤처기업' 창업 정보



II. 중소기업과 세금

2.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
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벤처투자기업, 연구개발기업, 신기술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
가. 벤처기업이란

- 벤처기업은 {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}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
-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, 연구개발 투자기업, 신기술 기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합니다.

1) 벤처투자기업

- 창업투자신탁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이고, 투자비율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유지된 기업

2) 연구개발기업

-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벤처기업확인요령 "별표2"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상(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)
- ※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2,500만원 이상,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제외

3) 신기술기업(예비 벤처기업)

- 창업전이거나 창업한지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사업성 및 기술성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
〈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〉

업종 (산업분류코드)	연구개발투자비율
제조업(15~37)	
- 의약품(242)	6% 이상
- 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	7% 이상
-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(30)	6% 이상
- 전기기계(31)	6% 이상
- 반도체 및 전자부품(321)	6% 이상
-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33)	8% 이상
- 기타제조업	5% 이상
도매 및 소매업(50~52)	6% 이상
통신업(64)	7% 이상
사업서비스업	
-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(72)	10% 이상
(인터넷산업)	(5% 이상)
기타산업	5% 이상

※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(2002. 12. 10 개정)

〈 벤처기업 유형 요약 〉

벤처유형	벤처요건	기술성·사업성 평가기관	확인기관
벤처 투자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투자기관(창투자, 신기술금융회사,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)이 기업의 자본금의 10% 이상 투자할 것 ·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·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	-	벤처캐피탈협회
기술평가 보증·대출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증·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· 보증·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일 것 ·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	기보, 중진공	기보, 중진공

〈 벤처기업 유형 요약 〉

연구 개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·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·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~10% 이상일 것 ·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	기보, 중진공, 한국기술거래소, 정보통신진흥연구원, 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 (기보, 산은, 전자부품연구원, 보건진흥원, 과학기술정보연구원, 발명진흥회, 에너지기술연구원, 전자통신연구원)	기보, 중진공
예비 벤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전이거나 창업한지 6개월 미만의 기업 · 사업성,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	"	기보, 중진공

나. 벤처기업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.

◇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인(<http://www.venturein.or.kr>)에서 접수



